<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95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0.07.30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0.02

heroine1983@nate.com

[돌통]

정 보 공 개 서

(주)돌통 돌아온옛날통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돌통 돌아온옛날통닭]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가맹비를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623번길 53, 102호(석대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811-798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811-798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운영 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 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추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돌통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623번길 53, 102호(석대동)					
(주)돌통 돌아온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변	<u>선</u> 호	대표팩스번호	
열어본 옛날통닭	2020.11.12	2021.02.01	이훈택	1811-7987		-	
	법인등록번호	180111-1324647	사업자등	록번호	7	71-86-0200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구 반송로623번길 53,	, 102호(석대동)				
대표이사	이훈택	돌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훈택	1811-7987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구 반송로623번길 53,	, 102호(석대동)				
사내이사	이성규	이성규	이성규	이성규	이성규	돌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훈택	1811-7987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부산시 해운대국	구 반송로623번길 53,	, 102호(석대동)				
감사	박상준	박상준 돌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훈택	1811-7987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주)돌통 돌아온옛날통닭]가 돌통(개인사업자)의 [돌통]가맹사업을 인수함	돌통	돌통	/U/3 U4 U I	부산시 금정구 청룡예전 로17, 상가1층(청룡동)	이훈택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돌통]이라고 합니다.)의 내용

가맹점사업자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돌통						
상 호	돌통 000 점						
상표(서비스표)	돌통	돌아온 옛날 통닭					
로 고	3 5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	239,830	199,462	40,367	1,001,269	23,589	30,367
2022	100,617	24,949	75,668	966,552	37,127	35,301
2023	345,900	210,895	135,005	1,522,363	66,002	59,337

2) 가맹본부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본부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단어구 이름		한 역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훈택	대표	2020.10.29~현재	대표	업무전반			
	이성규	이사	2020.10.29~현재	이사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상준	감사	2023.03.31.~현재	감사	업무감독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수(명)	직원수(명)			
, ,	상근	비상근	121(0)			
2023년 12월 31일	3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 과게이	이성규	가맹사업경영	2022.05.02.~현재	"나사리식당"이라는(등록번호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표권자	존속기간 만료일
572 65	서비스표	2021.08.05	4017601240000	이훈택	2031.08.05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서비스표 권리자로부터 가맹사업기간 동안 상표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ш. 가맹본부의 [돌통] 가맹사업 현황

1. [돌통]을 시작한 날 : 2020년08월16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돌통]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돌통	 돌통	이훈택	2020.08.16.	부산시 금정구
20	宣古	이군적	~2023.03.31	청룡예전로17, 상가1층(청룡동)
㈜돌통	도투	이훈택	2023.04.01.	부산시 금정구
돌아온옛날통닭	돌통	이군적	~2024.02.19	청룡예전로17, 상가1층(청룡동)
㈜돌통	도투	이승태	20240240 \$171	부산시 해운대구
돌아온옛날통닭	돌통	이훈택	2024.02.19.~현재	반송로623번길 53, 102호(석대동)

3. [돌통]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돌통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옛날통닭 전문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돌통]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1	l .	2022.12.31.			2023.12.31.		
71 -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7	1	9	9	0	12	12	0
서울	0	0	0	1	1	0	1	1	0
부산	7	6	1	7	7	0	7	7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2	2	0
경남	0	0	0	0	0	0	1	1	0

제즈	Ω	Ω	Λ	Λ	Λ	Λ	Λ	0	Λ
ツリナ		U	U						

5. 최근 3년간 [돌통]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6	0	9	0	0	7
2022	7	2	0	0	0	9
2023	9	3	0	0	0	12

6. [돌통]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정보공개서		가맹점/직영점의 수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특수 관계인	이성규	나사리식당	20215035	외식업(한식)	1/0	3/0	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TICH	2023년말	연간 평균		연간 평균 1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비고
지역	가맹점 수	연간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단위, 천원/
		매출액	3.3 m ² 당	6 2	3.3 m ² 당	아인	3.3 m ² 당	부가세 미포함)
전체	12	215,209	16,683	401,000	27,364	95,000	9,500	10곳
서울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부산	7	209,286	19,797	301,000	27,364	97,000	13,833	7곳
대구	0	-	-	-	-	-	-	-
인천	0	-	-	-	-	-	-	-
광주	0	-	-	-	-	-	-	-
대전	0	-	-	-	-	-	-	-
울산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세종	0	-	-	-	-	-	-	-
경기	0	-	-	-	-	-	-	-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경남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제주	0	-	-	-	-	-	-	-
	6개월	이상 영업한	· 총 10개미	H장을 기준	으로 계산히	h였습니다.	포스기준	

8. [돌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단위, 일)
2023	12	857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는 [돌통]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지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691-3 1층			91-3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돌통서울지사 돌통서울지사	김태윤	010.8248.3	8848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	계약	가맹금
	기 하는 무죄의 계탁기인	모집권한	체결	권한	수령권한
	2022.01.01.~2024.12.31	О	()	0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광고선전비로 23,73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2023년 손익계산서 기준)

11.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부산 금정구 개좌로 5	051-526-477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중소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또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비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비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비는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돌통]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초도물품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

1) 최초 가맹비를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150]				부가세포함
가입비	5,500	계약 체결일의 그 다음날까지 예치	가맹사업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따름	ᄼᆘᆒᄱᅜᆐᅺᇄ	
최초교육비	1,650	계약 체결일의 그 다음날까지 예치	교육시작일 1일전 계약해지	-	-교육시작 후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가맹점사 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없음			
보증금	없음	계약 체결일의 그 다음날까지 예치	가맹비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책임여부확인

3) 예치가맹비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비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150]					
가입비	5,500					
교육비	1,650					
보증금	없음					

4) 가맹점사업자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6,400	2,640			약 33m² (10평)기준
주방설비 (기계장비/주방집기)	미정	6,600	660	설치 3일 이전	설치 1일전 계약취소	냉장고,냉동고, 튀김기 등
실내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미정	16,500	1,650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실내공사
간판 및 사인몰	미정	2,200	220	설치 3일 이전	설치 1일전 계약취소	
의탁자	미정	1,100	110	설치3일전	설치 1일전 계약취소	

- □ 위 표의 금액은 가맹본부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의 점포시설을 직접 공사하는 경우, 인테리어노하우제공의 댓가로 평당 금15만원(부가세별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7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가당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후	
수시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2일 이전	교육 미실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미정	실비	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간판 설치 전 1일 이내 취소	취소기한 경과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체비 용은 기맹본부자의 귀 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로열티	가맹본부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VII 기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 한 지원 -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 발생채권 소으로 상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L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과 가맹본	부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단 갱신 및 재계약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가맹본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돌통]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돌통]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 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가맹비, 보증금 등 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제29조 참고)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가맹점사업자가 [돌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돌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 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한 마리+윙봉세트 등			
똥집튀김	왼쪽에 기재된 등 지정된 제품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똥집비빔면	세품이외의 메뉴글 단메달 수 없음	2회 위한, 2회 이상 시한 시청표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튀김떡볶이	1 82	341 -10 112. 11 1 -1111	

- □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본부는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에게 상품ㆍ용역에 대한 판매를 제한한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한 마리+윙봉세트 등	12,500 등		
똥집튀김	7,000	본사공문발송 등	
똥집비빔면	6,000	는 사이 전 환경 등	
튀김떡볶이	4,000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계열회사의 영업표 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종 영업표지
020 80 811	가맹본부	계열회사
통닭(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사업	돌통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가능여부	변경 사유
매장을 기준으로 반경500M를 영업지역 거리 ※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 기준 몰 등)의 경우에는 위의 영업지역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계약 중 불가능	별도합의 또는 계약갱신시동의 가 있는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C SUC PON ED	1-1.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	재조정 사유 발생→가맹본부 담 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돌통]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돌통]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구내	I 오라이.O 교라이	판매 매출액 비중(단	⊦ ⊆Ⅰ. ѹ៶
연도		에 만드다면 모르다면 기 매출액 비중	•	: Ti. 70)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돌통]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MINIC ENC NON EBINA.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거절(종료) 사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	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 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 [돌통]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제1항

4) 계약해지사유 및 그 절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 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가맹 본부의 상호, 가맹본부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가맹본부가 사용하였던 상호 를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	제32조 제1항	

서 사용하는 경우	
○ 위생적이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이라도 점포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 보수의	제32조 제1항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32조 제1항
○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점	
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	제22도 제4호
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제1항
○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	
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제32조 제1항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U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와 합의한 판촉활	
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	-U
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와 협	제 o o T 제 4 숙기
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제32조 제1항
○ 재계약 시점에서 로열티를 본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제1항
○ 기타 가맹계약 시에 협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2조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2조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 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2조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제32조2항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2조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 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가맹본부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시	사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 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대 리행사여부 통지	
업무위틱	보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 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돌통]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통닭(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본	부부는 [돌통]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니	ዘ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1. 가맹점사업자는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월 26일 이상을 영업하여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매니어그레이 고저하에 과하 버른 시해려 제15조 제16층에 따라 기매저나어다기 저다하 나오어이 연소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S/V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2주일	S/V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S/V팀	

가맹본부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가맹점사업자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는 [돌통]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라고 서거	고 성경 부담비율		ᆸ다정扎	HI T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홍보, 상품광고 및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를 가맹점이 균분 분담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제시) → 가맹점의 광고 등 참여 여부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결정(광고의 경우 가맹점 50%이상, 판촉의 경우 가맹점70% 이상 동의)	(2 1 0 1)
개별 행사	7	가맹점사업주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총 광고비 지출액중 일부(50%)로 하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은 가맹점사업자의간 균분하여 부담한다.
- □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35조 참고)

-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계약기간중 경업금지의

- 무, 자점매입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삼천만원(₩30,000, 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인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5조제5항)
- □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6조 참고)
 - ①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6조제1항 가맹비의 5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②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6조제1항 가맹비의 4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제3항의 가 맹본부 임직원의 정당한 점포출입을 막은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개,보수지시를 거부한 경우
 - ③ 아래 각호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6조제1항 가맹비의 25%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제41조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10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해약시 위약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가맹계약서 제36조)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보증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보증금)의 30%
계약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보증금)의 50%

- ※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명시된 가맹금 기준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6조)

가맹계약 중도해지시점과 위약금			
지난 6개월간 평균 월매출액 x5% x 잔존개월수			
(영업월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영업기간의 월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함.)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개월월 때까지 달디는 시간과 필요한 철자는 다음과 끝답니다. (단위, 전원/무가세포)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10개 가맹점 리스트제공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비 예치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비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丁世	· -	0176
점포환경개선	o점포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사유	러성이다 인선의 설립으로 인하여 가정자입의 충설성을 규지하기 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간판교체 비용	
가맹본부 부담	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비용항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	
	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o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	
	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지급절차	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비용부담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제외사유	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가맹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맹점부담 (가맹비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가맹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가맹본부는 [돌통]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때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돌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영업 중 인지해야할 사항 ○ 제품의 관리법 ○ 홀관리 방법 ○ 창업에 대한 마인드교육 ○ 본사규정 및 방향	실습 및 점포 요리지도	가맹점 오픈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매뉴개발 ◦가격변동및 규정변경시 ◦점주 집체교육의 필요성시	본사교육장 집체교육	분기별 및 필요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돌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신규 교육	10일(소요예정임)	55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소요예정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비고	

※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 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구입품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또는 동일한 품질기준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식재료에 대해, 지정된 상품을 구입 사용해야 한다. 그 중 아래의 품목에 대 해서는 사입을 절대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국내산닭(염지육)
근위(똥집)
윙봉
닭다리
조각닭(염지육)
정육(순살)
돌통 전용파우더
돌통 전용식용유
치킨양념소스(매콤,순한맛)
마늘듬뿍간장양념
불고기양념
국물떡볶이

[통일적 이미지 및 규격상품 사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또는 동일한 품질기준유지를 위해 아래의 품목에 대해, 동일한 이미지와 규격상품을 사용하기로 확약한다.

동일한 이미지/규격 사용 양념 컵박스,비닐봉투

[인근 10개 돌통 가맹점리스트]

지역	점포명	경영주명	전화	주소

[2023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1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1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